

문서명	기존	변경후
수출거래약정서	<p>제 13조 환매채무</p> <p>① 1. 수출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1항 및 제 2항(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의 모든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</p>	<p>제 13 조 환매채무</p> <p>① 1. 수출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1항(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의 모든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</p>
	<p>제 13조 환매채무</p> <p>① 2.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대금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 제 7조 제 1항 및 제 2항(당연 기한전 채무 변제의무 ; 해당 국가의 법제상 이들에 상당하는 경우 포함)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 있는 모든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</p>	<p>제 13 조 환매채무</p> <p>① 2.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대금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 제 7조 제 1항(당연 기한전 채무 변제의무 ; 해당 국가의 법제상 이들에 상당하는 경우 포함)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 있는 모든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</p>
	<p>제 13조 환매채무</p> <p>② 1. 수출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3항 및 제 4항(은행의 청구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의 모든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</p>	<p>제 13 조 환매채무</p> <p>② 1. 수출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2항 및 제3항 및 제 4항(은행의 청구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의 모든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</p>
	<p>제 14조 수출화물 처분대금의 변제충당</p> <p>③. 은행이 수출화물 및 선적서류를 처분하여 제 1항의 채무와 부도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수출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2조에 준하여 수출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</p>	<p>제 14조 수출화물 처분대금의 변제충당</p> <p>③. 은행이 수출화물 및 선적서류를 처분하여 제 1항의 채무와 부도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수출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조에 준하여 수출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</p>
	<p>제 15조 보험금</p> <p>②. 은행이 제 1항의 보험금을 제 4조 제 1항의 채무 및 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수출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2조에 준하여 수출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</p>	<p>제 15조 보험금</p> <p>②. 은행이 제 1항의 보험금을 제 4조 제 1항의 채무 및 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수출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조에 준하여 수출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</p>
	<p>제 16조 수출환어음 등의 반환</p> <p>①.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조(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)에 의한 상계, 대리 환급 변제충당의 경우 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환어음, 선적서류 및 수출화물을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</p>	<p>제 16조 수출환어음 등의 반환</p> <p>①.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조(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)에 의한 상계, 대리 환급 변제충당의 경우 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환어음, 선적서류 및 수출화물을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</p>

수입거래약정서 (Import Transaction Agreement)	제 5 조 보험금 ② 은행이 제1 항의 보험금을 제3조 제 1항의 채무 및 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수입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[12]조에 준하여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	제 5 조 보험금 ② 은행이 제1 항의 보험금을 제3조 제1항의 채무 및 이자 등의 변제에 충당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수입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[13]조에 준하여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	제 12 조 사전 상환청구 등 ① 수입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 1항 각호 및 제2항(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신용장의 잔액(신용장에 따른 수입환어음 발행 허용 한도액) 및 제15조에서 정한 이자 등에 대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전 상환채무를 부담하고, 곧 이를 신용장의 통화로 변제(또는 이행)하기로 한다.	제 12 조 사전 상환청구 등 ① 수입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각호(당연 기한전 채무 변제의무)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신용장의 잔액(신용장에 따른 수입환어음 발행 허용 한도액) 및 제15조에서 정한 이자 등에 대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전 상환채무를 부담하고, 곧 이를 신용장의 통화로 변제(또는 이행)하기로 한다.
	제 12 조 사전 상환청구 등 ② 수입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(은행의 청구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수입자는 은행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, 곧 이를 변제(또는 이행)하기로 한다.	제 12 조 사전 상환청구 등 ② 수입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, 제3항 및 제4항(은행의 청구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수입자는 은행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, 곧 이를 변제(또는 이행)하기로 한다.
	제 12 조 사전 상환청구 등 ⑤ 수입자가 제 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한 상환채무의 금액이 제8조에서 정한 바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상환채 무의 금액 및 제 15조에서 정한 이자 등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한다. 다만,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되, 수입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 12조에 준하여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	제 12 조 사전 상환청구 등 ⑤ 수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한 상환채무의 금액이 제8조에서 정한 바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상환채 무의 금액 및 제 15조에서 정한 이자 등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한다. 다만,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되, 수입자가 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수입자의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제 17 조 매입대금상환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 1. 본인이나 내국신용장환어음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(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모든 환어음	제 17 조 매입대금상환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,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 1. 본인이나 내국신용장환어음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 각 호 (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모든 환어음	

내국신용장거래약정서	제 17 조 매입대금상환 ②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및 제 5 항(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내국신용장어음등 매입대금 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	제 17 조 매입대금상환 ②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, 제3항 및 제4항(은행의 청구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)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내국신용장어음등 매입대금 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.
	제 18 조 환어음 등의 반환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(은행으로부터 의 상계 통)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환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채무변제 등의 시 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.	제 18 조 환어음 등의 반환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 조(은행으로부터 의 상계 통)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환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채무변제 등의 시 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.
지급보증거래약정서 (Application and Agreement for Issuance of Payment Guarantee)	없음	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(인)